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자료집



- I.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체크리스트 4**
 -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체크리스트 5

- II. 공정별 체크리스트 6**
 - Ⅰ 굴착공사 안전보건 자율 체크리스트 7
 - Ⅰ 골조공사 안전보건 자율 체크리스트 8
 - Ⅰ 마감공사 안전보건 자율 체크리스트 9

- III. 5대 건설기계 장비 안전작업 10**
 - Ⅰ 굴삭기 안전작업 점검표 체크포인트 11
 - Ⅰ 트럭류(덤프, 화물) 안전작업 점검표 체크포인트 12
 - Ⅰ 이동식크레인 안전작업 점검표 체크포인트 13
 - Ⅰ 고소작업대(차) 안전작업 점검표 체크포인트 14
 - Ⅰ 지게차 안전작업 점검표 체크포인트 15

- IV.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집중관리 16**
 - Ⅰ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핵심 안전조치 17
 - Ⅰ `19~21년 건설현장 주요 사망사고 기인물별 현황 18
 - Ⅰ 작업 전 안전미팅(TBM) 19

- V. 붕괴 예방 대책 20**
 - Ⅰ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중 붕괴 제도적·기술적 예방대책 21
 - Ⅰ 거푸집 동바리 작업 붕괴 사례 및 예방대책 23

- VI. 화재·폭발 예방 25**
 - Ⅰ 화재·폭발 위험 전파 26
 - Ⅰ 건설현장 화재·폭발 관련 주요법규 27

- VII.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29**
 - Ⅰ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30

- 2022년 건설업 클린사업 지원안내 32**

I.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체크리스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체크리스트

핵심요소	진단 항목	네	아니오
경영자 리더십	01.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하였습니까?		
	02.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하고 있습니까?		
	03.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까?		
근로자 참여	01.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02.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03.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까?		
위험요인 파악	01.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02. 산업재해, 아차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까?		
	03.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04.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05.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01.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02.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검토·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03. 위험요인을 대체·통제하기 위한 검토·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04.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고 있습니까?		
	05. 점검·정비·수리 등 비일상작업 안전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06. 위험요인 개선사항 반기 1회 이상 점검·조치하고 있습니까?		
비상조치계획 수립	01.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02. '재해 발생 시나리오' 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03.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까?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확보	01.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0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대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까?		
평가 및 개선	01.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02.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03.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고 있습니까?		



II. 공정별 체크리스트



굴착공사 안전보건 자율 체크리스트

골조공사 안전보건 자율 체크리스트

마감공사 안전보건 자율 체크리스트

현 장 명	(시공사명)		
주요 작업	점검일	점검자	

(점검결과 표기 → 양호: "O", 불량: "X", 해당무: ". /" / 비고 → 불량 내용 및 개선결과)

구분	점검사항	점검 결과	비고
공통 사항	1. 안전보건표지 • 유해, 위험시설 및 장소에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 부착 여부		
	2. 안전보건교육 • 신규 채용자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정기안전보건교육(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교육(연간 16시간) •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2시간 이상) (1톤 이상 크레인 사용작업, 운반용 등 하역기계 5대 이상 사용하는 작업, 굴착작업, 흙막이 지보공 보강 또는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해체 작업, 비계의 조립·해체·변경작업, 건축물 골조·콘크리트 인공 구조물 해체작업,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밀폐공간 작업, 석면해체제거작업,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3. 추락 등 위험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추락 낙하 위험	4. 작업발판 • 폭 40cm이상, 간격 3cm이하 / 비계기둥간 최대적재하중 400kg이하 • 위험경고판 부착, 안전난간 설치		
	5. 안전난간/개구부덮개 [안전난간] 상부난간대 90~120cm이상,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설치 (난간대 지름 27cm 이상 강관) [덮개] 손상·변형·부식 없는 합판(t=12mm) 등을 스톱퍼 및 못으로 고정 추락주의 표시		
	6. 이동식비계 • 비계 최상부 안전난간 설치, 브레이크 빼기 등으로 바퀴 고정 후 아웃트리거 설치		
	7. 사다리 • 작업대로 사용금지(이동통로 로만 사용) • 견고한 구조, 심한 손상이 없는 재료 사용, 미끄럼방지장치 부착		
굴착 공정 위험	8. 낙하물 방지조치 시설 • 수직·돌출형(높이 10m 이내 설치, 내민길이 2m 이상, 각도 20도~30도 사이) 방망, 비계와 건축물 사이 낙하물 방지망, 주출입구 방호선반, 출입금지 조치 등		
	9. 굴착 작업 시 토석붕괴 위험 방지 • 토석의 낙하 위험이 있는 경우 토질의 종류에 따른 굴착면의 기울기 적정 유지 및 토석 제거 • 굴착작업 사전에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등을 점검 • 굴착작업 시 붕괴·낙하 위험시 흙막이지보공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10. 굴착작업 시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 흙막이지보공 조립 작업 시 조립도 작성 및 조립도에 의한 작업 실시 • 흙막이지보공 설치 시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 부재의 접촉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침하의 정도,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등		
	11. 건설기계장비 안전조치 •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 배치, 지반 등 침하 방지 조치 • 작업 전 기계의 사전 점검,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굴착작업 포함) 작업계획서 작성 등		

※ 화재·폭발·추락·붕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중지 및 노동자 대피,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후 작업재개

골조공사 안전보건 자율 [체크리스트]



현 장 명	(시공사명)		
주요 작업	점검일	점검자	

(점검결과 표기 → 양호: "O", 불량: "X", 해당무: ". /" / 비고 → 불량 내용 및 개선결과)

구분	점검사항	점검 결과	비고
공통 사항	1. 안전보건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 위험시설 및 장소에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 부착 여부 		
	2. 안전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채용자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확인 정기안전보건교육(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교육(연간 16시간)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2시간 이상) (1톤 이상 크레인 사용작업, 운반용 등 하역기계 5대 이상 사용하는 작업, 굴착작업, 흙막이 지보공 보강 또는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해체 작업, 비계의 조립·해체·변경작업, 건축물 골조·콘크리트 인공 구조물 해체작업,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밀폐공간 작업, 석면해체제거작업,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3. 추락 등 위험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추락 낙하 위험	4. 작업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 40cm이상, 간격 3cm이하 / 비계기둥간 최대적재하중 400kg이하 위험경고판 부착, 안전난간 설치 		
	5. 안전난간/개구부덮개 [안전난간] 상부난간대 90~120cm이상,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설치 (난간대 지름 27cm 이상 강관) [덮개] 손상·변형·부식 없는 합판(t=12mm) 등을 스토퍼 및 못으로 고정 추락주의 표시		
	6. 이동식비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계 최상부 안전난간 설치, 브레이크 빼기 등으로 바퀴 고정 후 아웃트리거 설치 		
	7. 사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대로 사용금지(이동통로 로만 사용) 견고한 구조, 심한 손상이 없는 재료 사용, 미끄럼방지장치 부착 		
8. 낙하물 방지조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직·돌출형(높이 10m 이내 설치, 내민길이 2m 이상, 각도 20도~30도 사이) 방망, 비계와 건축물 사이 낙하물 방지망, 주출입구 방호선반, 출입금지 조치 등 			
골조 공정 위험	9. 거푸집 동바리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 검토 후 조립도 작성,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 수직도 유지, 상·하부 고정, 경사동바리 빼기조치, 수평보강, 전용철물 접속 등 층고 4m 이상 설치 시 시스템써포트 사용(권장사항) 		
	10. 강관 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하방지조치(갈목, 갈판 등을 사용하여 밀동잡이 설치), 접속부 또는 교착부에는 부속철물 접속, 벽이음 연결,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설치 		

※ 화재·폭발·추락·붕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중지 및 노동자 대피,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후 작업재개

마감공사 안전보건 자율 [체크리스트]



현 장 명	(시공사명)		
주요 작업	점검일	점검자	

(점검결과 표기 → 양호: "O", 불량: "X", 해당무: ". /" / 비고 → 불량 내용 및 개선결과)

구분	점검사항	점검 결과	비고
공통 사항	1. 안전보건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 위험시설 및 장소에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 부착 여부 		
	2. 안전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채용자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확인 정기안전보건교육(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교육(연간 16시간)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2시간 이상) (1톤 이상 크레인 사용작업, 운반용 등 하역기계 5대 이상 사용하는 작업, 굴착작업, 흙막이 지보공 보강 또는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해체 작업, 비계의 조립·해체·변경작업, 건축물 골조·콘크리트 인공 구조물 해체작업,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밀폐공간 작업, 석면해체제거작업,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3. 추락 등 위험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추락 낙하 위험	4. 작업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 40cm이상, 간격 3cm이하 / 비계기둥간 최대적재하중 400kg이하 위험경고판 부착, 안전난간 설치 		
	5. 안전난간/개구부덮개 [안전난간] 상부난간대 90~120cm이상,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설치 (난간대 지름 27cm 이상 강관) [덮개] 손상·변형·부식 없는 합판(t=12mm) 등을 스토퍼 및 못으로 고정 추락주의 표시		
	6. 이동식비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계 최상부 안전난간 설치, 브레이크 빼기 등으로 바퀴 고정 후 아웃트리거 설치 		
	7. 사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대로 사용금지(이동통로 로만 사용) 견고한 구조, 심한 손상이 없는 재료 사용, 미끄럼방지장치 부착 		
8. 낙하물 방지조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직·돌출형(높이 10m 이내 설치, 내민길이 2m 이상, 각도 20도~30도 사이) 방망, 비계와 건축물 사이 낙하물 방지망, 주출입구 방호선반, 출입금지 조치 등 			
마감 공정 위험	9. 내부 미장, 조적, 방수 작업 시 위험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기계기구 누전차단기 경유 사용, 전기 리드선 및 콘센트 접지 유지 비계 및 이동식비계의 승강통로, 작업발판 안전난간 유지 밀폐공간 방수작업 시 급기·배기시설 설치,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작성 및 이행 		
	10. 외부석재 및 판넬, 유리 작업 시 위험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마감작업시 비계, 벽이음 보완 유지, 자재 임중구간 출입금지 조치 S.W.C, 고소작업대, 곤돌라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인증·안전검사 실시, 작업대에 과적재 금지, 근로자 안전대 지급 및 착용 		
	11. 전기, 기계설비 작업 시 위험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위험방지조치 실시(불티비산부위 착화방지조치, 가연성물질, 방치금지, 소화기 및 화재감시자 배치) 중량물 반입 및 운반 거치 시 작업계획 작성, 각종 앵커 및 달기구류 안정성 검토 및 견고한 설치 유지 		

※ 화재·폭발·추락·붕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중지 및 노동자 대피,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후 작업재개

굴삭기 안전작업 점검표 [체크리스트]



Ⅲ. 5대 건설기계·장비 안전작업



굴삭기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트럭류(덤프, 화물)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이동식크레인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고소작업대(차)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지게차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점검시기

작업 전 점검

점검자

점검일자 20 . . .

구분	번호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사항
운전자격 적정여부	1	• 운전원 면허 자격 여부 (3톤 미만 :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 3톤 이상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2	• 버킷 유압커플러 이탈방지장치(안전핀) 체결상태		
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상태	3	• 후진경보장치 및 후방카메라 작동상태		
	4	• 양중 및 운반·하역작업 사용금지 (작업반경 내 근로자 접근통제조치를 한 경우 예외)		
목적외 사용금지	5	• 불(암), 유압장치, 선회장치 등 주요 구조부 상태		
	6	• 트랙, 슈, 링크핀, 롤러상태(무한궤도식) • 타이어 손상 및 마모상태(타이어식)		
굴착작업 운영의 안전성	7	• 운전자의 시야 확보 (전면 유리상태 및 후사경 설치상태)		
	8	• 운전석 조작장치 및 제동장치 등 작동상태		
	9	• 운전원은 급선회 금지 (작업반경 내 근로자 접근통제조치를 한 경우 예외)		
안전작업을 위한 준수사항	10	• 상·하 동시작업 금지 (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 유무 확인)		
	11	• 버킷에 근로자 탑승금지		
	12	• 노폭의 유지, 노견(굴착면, 경사면 포함) 무너짐 방지 및 지반 침하방지 조치		
	13	• 운전원이 운전석 이탈 시 버킷을 지상에 내려놓기		
	14	• 후진 시 깔림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15	• 수리·점검항목 등 이력기록 관리상태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핵심 안전조치

IV.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집중관리



🔍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핵심 안전조치

🔍 '19-21년 건설현장 주요 사망사고 기인물별 현황

🔍 작업 전 안전미팅(TBM)

안전대 착용! 안전난간 설치! 작업 전 안전점검(TBM)! 생명을 지킵니다.

1위 단부·개구부 떨어짐

단부 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고정

2위 철골 떨어짐

철골 인양 전,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3위 지붕 떨어짐

안전모·안전대 착용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4위 비계·작업발판 떨어짐

안전난간 설치,
외벽 틈 추락방호망 설치

5위 굴착기 부딪힘

작업반경 출입통제
후방영상장치 작동 확인

6위 고소작업대 떨어짐

안전대 체결
작업대 이탈 금지

7위 사다리 떨어짐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8위 달비계 떨어짐

구명줄 안전대 체결
2개 고정점 설치(구명줄,작업줄)

9위 트럭 부딪힘

이동구간 출입통제
전담유도자 배치

10위 이동식 비계 떨어짐

최상부 안전난간 설치

11위 거푸집·동바리 떨어짐

시스템동바리 사용
하부 추락방호망 설치

12위 이동식크레인 맞음

인양물 고정 철저
하부 출입통제

'19~'21년 건설현장 주요 사망사고 기인물별 현황

기인물	계	1억 미만	1억 이상		기타		
			1~50억	50억 이상			
건축 및 구조물	단부 및 개구부	106	19	87	51	36	0
	철골	69	7	6	48	14	0
	지붕	138	92	46	40	6	0
	비계 및 작업발판	77	10	67	39	28	0
	거푸집 및 동바리	39	2	37	17	20	0
	사다리	62	27	35	22	13	0
	이동식비계	41	16	25	18	7	0
	달비계	37	14	23	21	2	0
	계 단	17	3	14	12	2	0
	흙막이 지보공	14	0	14	7	7	0
	기 타	149	49	99	53	46	1
소 계	749	239	509	328	181	1	
기계 장비	굴착기	63	12	49	28	21	2
	고소작업대	62	19	43	28	15	0
	트럭	52	9	35	19	16	8
	이동식크레인	33	4	28	13	15	1
	타워크레인	13	1	12	3	9	0
	항타기	10	0	10	3	7	0
	콘크리트펌프카	6	0	6	2	4	0
	콘크리트믹서트럭	6	0	6	2	4	0
	기 타	48	7	40	18	22	1
	소 계	293	52	229	116	113	12
부속물 및 설비	168	32	132	77	55	4	
기 타	93	23	67	45	22	3	
총 계	1,303	346	937	566	371	20	
12대 기인물 소계	779	231	537	344	193	11	
(비 중)	59.8%	66.8%	56.1%	60.8%	52.0%	55.0%	

* 공식통계 기준(승인일 기준), 기인물별 현황은 세부분류 기준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

작업 전 안전미팅(TBM)

작업 전 안전미팅(Tool Box Meeting)

“잠깐! 작업 전 10분! 위험요인 확인했나요?”

작업 전 안전미팅(TBM)이 무엇인가요?

반드시 별도의 안전미팅을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업회의를 하면서 작업자별로 준수할 안전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해도 좋습니다.

TBM이란?

작업 시작 전,
현장에서 소규모로 단시간에 실시하는 회의로 안전확보를 위한 세부
작업방법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 전략 1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 ✓ 전략 2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 전략 3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작업 전 10분! TBM 이렇게 실행합니다!

- 준비단계**
 - ✓ 모든 구성원이 참석합니다.
 - ✓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찾습니다.
 - ✓ 관리자는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습니다.
- 확인 단계**
 - ✓ 모든 작업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 ✓ 오늘 할 작업이 무엇인지 공유합니다.
 - ✓ 작업자 스스로가 위험을 예지하고 함께 해결방법을 찾습니다.
- 개선단계**
 - ✓ 작업자 모두가 합의하여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합니다.
 - ✓ 관리감독자는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교육합니다.
 - ✓ 작업자는 관리감독자의 교육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 마무리단계**
 - ✓ 나와 옆 사람이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 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한번 더 되새깁니다.
 - ✓ 작업자가 다 함께 안전구호를 외칩니다.

V. 붕괴 예방 대책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중 붕괴 제도적·기술적 예방대책

제도적 예방대책

• 대수선 공사 시 건축법 관련 허가 등의 제반사항 준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 9. (생략)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공사는 명백히 대수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 (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 8. (생략)

2층 이상 건축물 등의 대수선은 설계자가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반드시 구조 안전의 확인서류를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

• 리모델링 해체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제반사항 준수

- 건물 노후화, 철거 등으로 건물이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건축물에 대해 사전 안전성평가 실시(산업안전보건규칙 제52조)
-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준수(산업안전보건규칙 제38조)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중 붕괴 제도적·기술적 예방대책

기술적 예방대책

리모델링 해체작업 시공 전 확인사항

- 구조안전성 검토 여부
- 설계도서 및 시방서 내용
- 해체작업 대상(내력벽 또는 비내력벽 분별), 현장여건과 설계도서의 일치 여부
- 해체작업 작업계획서 작성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구성 내용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 사업장 내 연락방법 - 해체물의 처분계획 -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리모델링 해체작업 시공 중 확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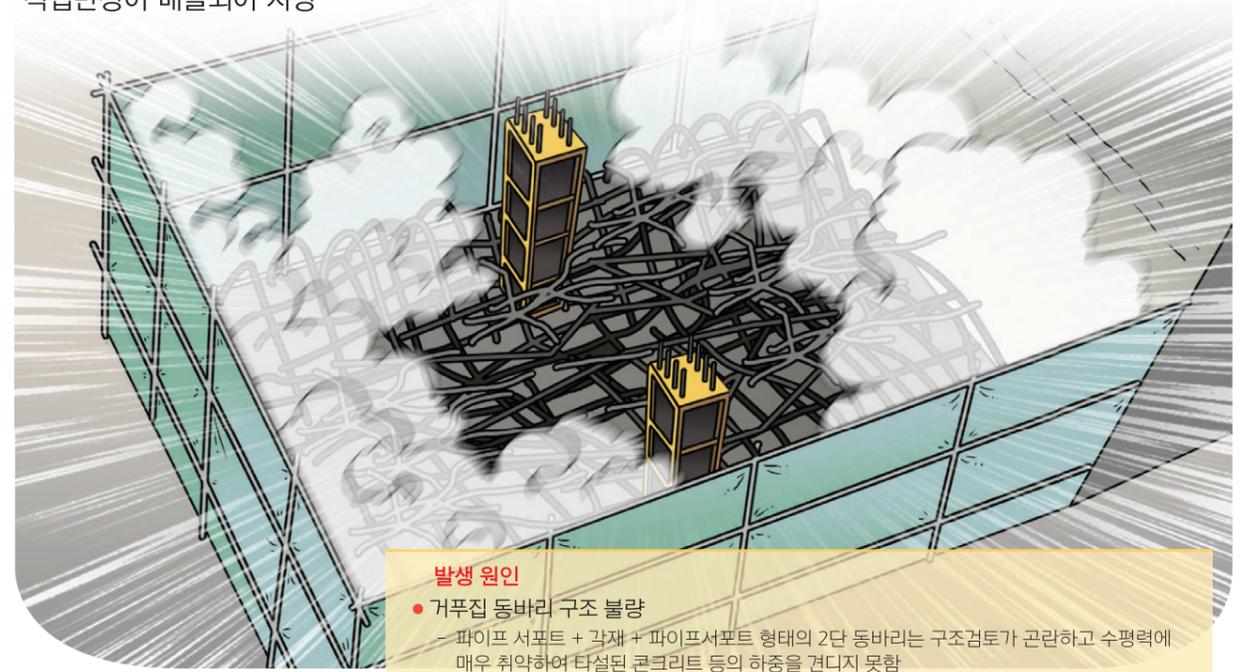
- 구조 전문가 권고사항 이행 (잭서포트 등 구조적 보강, 해체작업 순서 명확화 등)
- 작업계획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업 진행
- 중량물 취급 수반 시 별도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지휘
- 간막이 조적벽체(비내력벽)의 경우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순차적 해체
- 내력벽체 및 기둥 철거 시 충분한 내력의 구조 보강재 선행 설치

리모델링 철거·해체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① 대수선은 관계 구청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수선임에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하거나, 단순 용도변경으로만 허위로 허가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이행강제금 부과
- ② 내력벽 및 기둥 해체는 건축물 구조거동 불안정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 정밀 검토 및 설계자의 구조 안전성 확인 자료를 대수선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해체작업은 작업계획서를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을 통해 주지시킨 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거푸집 동바리 작업 붕괴 사례 및 예방대책

병원증축공사 현장에서 '파이프 서포트 + 각재 2단 + 파이프서포트' 형태의 불안정한 동바리구조로 층고 5.9미터의 슬라브 및 기둥거푸집 콘크리트 타설 직후 동바리 및 거푸집이 전면 붕괴되면서 하부에서 동바리 상태 확인 중이던 작업반장이 매몰되어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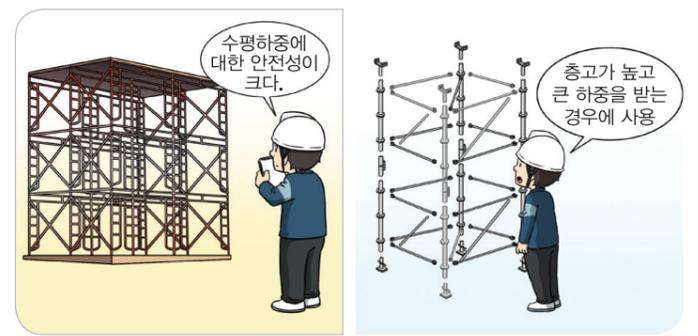


발생 원인

- 거푸집 동바리 구조 불량
 - 파이프 서포트 + 각재 + 파이프서포트 형태의 2단 동바리는 구조검토가 곤란하고 수평력에 매우 취약하여 타설된 콘크리트 등의 하중을 견디지 못함
- 불량재료 사용 등
 - D10mm 철근을 연결핀으로 사용 및 철선으로 수평연결재를 고정하는 등 내력이 부족한 재료 사용

TIP 안전작업

- 1 동바리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후 시공
 - 거푸집 동바리는 정확한 구조검토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 견고한지 검토하고 그에 맞는 표준도립도를 작성하여 정확히 시공
- 2 거푸집동바리 설치 시 안전조치 철저
 - 파이프 서포트를 2분 이어서 사용 시는 받이판이 손상이 없는 재료를 4개 이상의 볼트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연결핀, 크램프 등은 전용철물을 사용



시스템 서포트로 시공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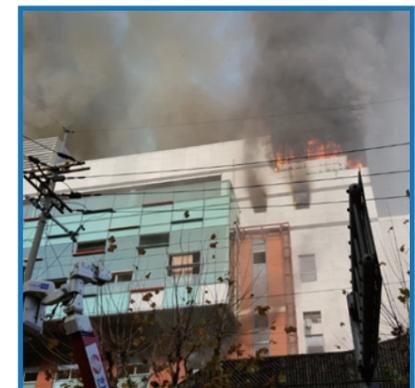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거푸집동바리 등의 안전조치)

불안정한 구조의 거푸집동바리 붕괴

거푸집 동바리 설치 시에는 구조검토 및 조립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VI. 화재·폭발 예방



화재·폭발 위험 전파

화재·폭발 발생 매커니즘 관리대책



가연물 관리

✓ 작업 시작전 가연물의 제거·폐지·차단 확인

- 제거작업 전 가연물의 물질특성 파악후 시작
-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 용기나 배관 내용을 배출, 표식 등 안전조치사항 확인
- 용접불꽃 비산방지를 위한 각종 개구부 차단 여부 확인

✓ 가스·분진 누출 여부 확인

- 독성, 가연성 가스 퍼지 후 가스잔류 여부 확인
- 용단 전 냉각 후 테스트 홀을 통하여 가스감지
- 비중, 환기상태, 누출원 등을 고려하여 실시

✓ 내용물 제거시 안전 대책

- 가연성 가스·분진 제거 후 공기로 치환
- 잔존물 이송시 철재호스 사용 및 접지
- Non-Spark 재질의 방폭 등·공구 사용

점화원 관리

✓ 작업 시작전 가연물의 제거·폐지·차단 확인

- 스티로폼 등 가연성 주변, 인화성 물질 주변 설비 (용기, 배관 등) 근처 및 인화성 물질 취급 밀폐공간에서 화기작업 금지 ※ 화기작업 : 용접, 용단 등

✓ 안전점검 및 화기작업 허가 절차

- 독성, 가연성 가스 퍼지 후 가스잔류 여부 확인
- 용단 전 냉각 후 테스트 홀을 통하여 가스감지
- 비중, 환기상태, 누출원 등을 고려하여 실시

화기작업 중 확인사항

- 주변 작업조건의 변동 및 위험물질 유입 여부
- 작업 중 지속적인 인화성 가스 측정
- 작업 관계자 외 인원의 출입 통제
- 불꽃으로 인한 주변의 화재가능성 방지 조치

✓ 중점관리 철저

- 산소와 점화원은 제거가 불가능하므로 가연물에 대한 집중관리(격리, 제거, 방호)가 중요

용접·용단 작업 전 안전점검 항목

구분	항 목	해당여부
필수	작업 시작 전·재시작 전에 가스농도를 측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배관·용기 내부의 위험물을 배출·제거하고, 유입방지조치를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가스 용기 및 사용 기구에 대한 누설여부 등을 점검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추가	주변 위험물 정보를 파악·공유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불이 붙기 쉬운, 주변에 존재하는 가연물은 제거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등 불꽃, 불티 등 비산 방지조치를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주요 화기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를 받고 작업을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위험물이 남았지 않도록 제거 또는 환기조치를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가설전선 및 전기 기계·기구는 절연조치를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착화위험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건설현장 화재·폭발 관련 주요법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 10조의2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는 공사 현장 “화재위험작업” 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 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화재위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요약

- ① 화재위험작업이란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말하며 용접이나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도 포함
- ② 전열기구나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거나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키는 등의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③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시정보완 명령이 내려지며 보완 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됨.
- ④ 임시소방시설 설치대상 공사장은 건축허가등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모두가 포함되며 규모에 따라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해야 함.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 ① 소화기 : 모든 공사 작업장에 설치
- ② 간이소화장치¹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 ③ 비상경보장치² : 연면적 4백제곱미터 이상 또는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150제곱 미터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 ④ 간이피난 유도선³ :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주)

¹ : 물을 방사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²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³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건설현장 화재·폭발 관련 주요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용접 등 불꽃발생 작업 시 불꽃 비산방지, 환기 및 소화기구 비치 미준수로 화재가 빈발함에 따라 화재예방제도 강화

- 불꽃발생 우려가 있는 화기작업 장소에 대해 원청의 안전조치 책임을 부과('17.10.17, 시행규칙 개정)
-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사전 특별교육 실시('17.10.17, 시행규칙 개정)
 - ※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삭연마 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포함 ('17.10.17, 시행규칙 제30조 4항 9호 라목 개정)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장소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기본적으로 체크하여야 할 조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금지
제240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제241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제242조	화기사용 금지
제243조	소화설비
제244조	방화조치
제245조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제246조	소각장

※ 상기 조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관련 법령 및 조항이 있음을 유념한다.

VII.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No.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벌칙
1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 [관리감독자] 제17조 [안전관리자] 제18조 [보건관리자]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금액 20억원이상 현장은 현장소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안전보건 업무 총괄 반장, 조장, 부서장 등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안전점검 등 안전보건업무 수행 안전보건에 관해 사업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현장 근로자(근로자대표 등 9명 이내)와 사용자 위원(사용자 대표, 안전관리자 등 9명 이내) 동수 구성, 분기 1회이상 정기회의 개최 상시 근로자 100명이상 사용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제29조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제31조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제32조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교육실시: 비사무직(분기6시간), 사무직(분기3시간), 관리감독자(연간16시간) 채용시교육: 일용직(1시간이상), 일용직외 근로자(6시간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실시: 건설업(2시간이상), 건설업외(1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교육: 전업종 작업반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연간 16시간교육 ※ 교육일지작성(참석자 명단 날인포함)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자(4시간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신규 및 보수교육 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제34조 [법령요지의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법령요지를 게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하여야함 	500만원 이하 과태료
5	제36조 [위험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 과태료
6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표지를 부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참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7	제38조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기계·기구 설비 위험방지: 리프트, 크레인, 동근톱, 프레스 등 방호장치 전기, 열, 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방지: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추락, 낙하, 비래, 붕괴 등 위험방지: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 안전벨트 착용 등 굴착, 하역, 벌목,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 위험방지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중량물 취급, 트럭/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8	제39조 [보건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 오염, 소음·진동 이상기압, 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 장애예방 조치 - 국소배기 설치기동, 밀폐공간 프로그램,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휴게시설, 방독마스크, 귀마개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등 조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9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상높이 31미터이상인 건축물, 깊이 10미터이상인 굴착공사 등 현장은 착공전에 안전보건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No.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벌칙
10	제57조 [산업재해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재해발생 보고(재발방지계획서등 작성 3년 보관) - 근로자 사망시: 관할노동지청 산재예방과에 지체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 - 부상·질병시: 휴업재해 3일이상 업무상 부상발생시(업무상 질병 승인후)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재해발생(승인)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은폐) 1천만원이하 벌금 (중대재해) 3천만원이하 과태료 (산업재해) 1천500만원이하 과태료
11	제64조 [도급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교육실시 확인, 경보체계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위생시설이용의 협조, 	500만원이하 과태료
12	제7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현장, 발주자 또는 자체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 및 지급. 도급업체는 안전보건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 작성 	1천만원이하 과태료
13	제73조 [재해예방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미만 건설현장(토목공사는 150억 미만) 매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재해예방 지도 	300만원이하 과태료
14	제80조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장치 실시 지게차, 크레인, 승강기 리프트 용접기, 연삭기, 목재가공 동근톱, 가스집합용접장치,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보일러, 롤러기, 수동대패, 산업용로봇,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 축기, 램핑기, 금속절단기 등 방호장치를 하지 않고 사용하면 안됨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5	제84조 [안전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인증 -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고소작업대, 기계톱(이동식만 해당),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등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 판매하여야 함 (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함)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6	제93조 [안전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 크레인(2톤이상), 리프트, 곤돌라, 압력용기, 프레스, 국소배기장치(49종 50%초과), 원심기(산업용),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로봇은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17	제1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운반·저장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또는 비치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18	제119조 [석면조사] 제121조 [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등] 제122조 [석면의 해체·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소유주 또는 임차인등은 일반석면조사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함(고용노동부 지정 석면 조사기관) 일정 면적이상의 석면함유 건축물 설비 철거시 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해 철거해체해야 함(고용노동부 지정 석면해체업자) 	5년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9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리적인자 소음(80AdB 이상), 분진/화학물질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실시 - 6개월에 1회 이상 	1천만원이하 과태료
20	제129조 [건강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건강진단: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노출근로자(유해인자별 6개월 ~ 2년 1회) 	1천만원이하 과태료
21	제164조 [서류의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재해발생기록,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서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등: 3~30년간 등 보관 	300만원이하 과태료

건설업 클린사업 지원안내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대상 ☑ 연간 3회까지 지원 (20억 미만: 6개소)

신청방법 공단 지역별 일선기관 우편·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 (clean.kosha.or.kr)

01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과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
(원도급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 산업재해 보상보험 완납조건)
- ※ 지원제외대상: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02 지원조건

-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조건표 기준)
 - 안전방망(낙하물방지망, 추락방호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설치비용(공단판단금액)의 3억 미만 65%, 3~20억 미만 60%, 20~50억 미만 50%까지 지원
- 전문건설업체(하도급)의 시스템비계 보조금은 임대비만 지원(조건표 금액의 47%), 안전방망에 대해서는 재료비*에 공사금액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원
 - * 안전방망 재료비 세부금액은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clean.kosha.or.kr)
 - ※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원도급사 보조시와 동일 지원

03 보조대상설비

- 시스템비계: 수직·수평·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 일체
- 안전방망: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추락방호망 및 수직보호망(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 적합품)
- 사다리형 작업발판: 최대높이 3.5m 이하, 상부에 작업발판이 설치된 사다리(S마크 인증품), 현장당 2개 이내
 - ※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수직보호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에 한하여 지원

04 지원절차



05 보조지원 대상설비 예시



건설업 클린사업 지역별 일선기관 연락처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번호(☎1544-3088) 및 지역별 일선기관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kosh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일선기관명	연락처	관할지역
1	서울광역본부	02-6711-2898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2	서울동부지사	02-2086-8033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3	서울남부지사	02-6924-8738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4	강원지역본부	033-815-1042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5	강원동부지사	033-820-2512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6	부산광역본부	051-520-0516	부산광역시
7	울산지역본부	052-226-0548	울산광역시
8	경남지역본부	055-269-0533	경상남도(창원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군, 남해군,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9	경남동부지사	055-371-7534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10	광주광역본부	062-949-8793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11	전북지역본부	063-240-8563	전라북도(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12	전북서부지사	063-460-3635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13	전남지역본부	061-288-8753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14	전남동부지사	061-689-4945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15	제주지역본부	064-797-7512	제주특별자치도
16	인천광역본부	032-510-0585	인천광역시
17	경기지역본부	031-259-7141	경기도(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18	경기북부지사	031-828-1952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19	경기서부지사	031-481-7572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20	경기동부지사	031-785-3336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21	경기중부지사	032-680-6541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22	고양파주지사	031-540-3827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23	대구광역본부	053-609-0534	대구광역시(북구, 중구, 동구, 수성구)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24	대구서부지사	053-650-6855	대구광역시(남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25	경북지역본부	054-478-8014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 영주시, 봉화군,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의성군, 예천군, 영양군, 청송군)
26	경북동부지사	054-271-2034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27	대전세종광역본부	042-620-5623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28	충북지역본부	043-230-7116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29	충북북부지사	043-849-1022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30	충남지역본부	041-570-3454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태안군)

MEMO

안전을 위한
우리를 We한

